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검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,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, 전문 수사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부에서 일반 형사사건 외에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며,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,

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 일부의 명칭을 국제범죄수사부, 정보기술범죄수사부, 조세범죄조사부, 중요범죄조사부 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수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14. ~ 6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형사제5부·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”를 “형사제5부·형사제6부 및 공판제1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형사제6부·형사제7부”를 “형사제7부”로, “여성아동범죄조사부·공판제3부·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”를 “조세범죄조사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공판제2부·공판제3부 및 사무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형사제10부·형사제11부·형사제12부·형사제13부·형사제14부 및 사무국”을 “공공수사제3부·중요범죄조사부·국제범죄수사부·정보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제4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반부패·강력수사제1부, 반부패·강력수사제2부, 반부패·강력수사협력부, 경제범죄형사부, 공정거래조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”를 “반부패수사제1부, 반부패수사제2부, 반부패수사제3부, 강력범죄수사부, 공정거래조사부,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제5부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공공수사제2부”를 “공공수사제2부, 공공수사제3부”로, “형사제10부, 형사제11부, 형사제12부, 형사제13부, 형사제14부, 반부패·강력수사제1부, 반부패·강력수사제2부, 반부패·강력수사협력부, 경제범죄형사부”를 “반부패수사제1부, 반부패수사제2부, 반부패수사제3부,

중요범죄조사부, 강력범죄수사부, 국제범죄수사부, 정보기술범죄수사부, 조세범죄조사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공수사제1부장 및 공공수사제2부장”을 “공공수사제1부장, 공공수사제2부장 및 공공수사제3부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제1호 내지 제3호에”를 “제1호, 제3호 및 제4호와”로 한다.

4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형사제8부장·형사제9부장·형사제10부장·형사제11부장·형사제12부장·형사제13부장 및 형사제14부장”을 “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반부패·강력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·강력수사제2부장”을 “반부패수사제1부장, 반부패수사제2부장 및 반부패수사제3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(중전의 라목) 중 “가목부터 다목까지”를 “가목 및 나목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제1호 및 제2호에”를 “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”로 한다.

3. 일반 형사사건 및 중요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, 그 송치사건의 수사·처리 및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
가.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

나. 중요 기업범죄
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

5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(반부패수사제3부에 한정한다)

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.

⑦ 중요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검사장이 지정하는 고소·고발·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·마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강력·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, 그 송치사건의 수사·처리 및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제13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국제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⑪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정보기술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⑫ 조세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조세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제13조제1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한다.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제14조제3항 중 “공공·외사수사부”를 “공공·국제범죄수사부”로 한다.
제15조제1항 중 “공공·외사수사부”를 “공공·국제범죄수사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3조제4항”을 “제13조제4항, 제7항,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13조제6항”을 “제13조제6항, 제8항”으로 한다.

⑤ 공공·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형사제3부·형사제4부”를 “형사제3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반부패수사부, 강력범죄형사부”를 “형사제4부, 반부패수사부, 강력범죄수사부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 중 “강력범죄형사부”를 “강력범죄수사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”을 “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7항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사항”을 “제13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

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16조의3제2항 중 “외사범죄형사부”를 “국제범죄수사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강력범죄형사부”를 “강력범죄수사부”로, “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형사부”를 “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수사부”로 한다.

제16조의4제1항 중 “강력범죄형사부, 외사범죄형사부”를 “강력범죄수사부, 국제범죄수사부”로, “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형사부”를 “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수사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③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6항, 제7항,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제16조의4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”을 “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일반 형사사건, 산업기술”을 “산업기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건과”를 “사건에”로, “수집·관리”를 “수집·정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

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한다.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제16조의4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⑨ 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16조의6제3항 중 “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6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”를 “형사제4부장·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”로, “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”를 “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”로 한다.

제16조의7제3항 중 “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”을 “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7항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3조제6항”을 “제13조제6항, 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8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③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(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2항(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), 제3항, 제4항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, 제15항(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

한정한다)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제16조의9제1항 중 “사이버범죄형사부”를 “사이버범죄수사부”로, “조세범죄형사부”를 “조세범죄조사부”로, “식품의약품범죄형사부”를 “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”로, “형사제5부 및 공판송무부”를 “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형사제6부장 및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”를 “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, 제11항, 제12항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), 제13항, 제14항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”로 한다.

제16조의9제3항 중 “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”를 “형사제3부장·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

장하고,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”를, “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”로, “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”를 “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”로 한다.

제16조의9제5항 중 “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3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3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”을 “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형사제1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2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3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”을 “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이버범죄형사부장”을 “사이버범죄수사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일반 형사사건과 사이버범죄”를 “사이버범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4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제16조의9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⑨ 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16조의9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식품의약품범죄형사부장”을 “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일반 형사사건과 식품의약품”을 “식품의약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관련 범죄정보”를 “관련된 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제1호 및 제2호에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”로 한다.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제16조의9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환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제16조의10을 삭제한다.

제16조의11제2항 중 “제13조제4항”을 “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, 제6항제1호, 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호 중 “검사장”은 “지청장”으로 본다.

제16조의11제3항 중 “제13조제4항”을 “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

6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, 제6항제1호, 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호 중 “검사장”은 “지청장”으로 본다.

제16조의11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 등)”을 “(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인천지방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란 중 “강력범죄형사부”를 “강력범죄수사부”로 한다.

서울중앙지방검찰청	공공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중요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사무국	공공수사지원과 수사제1과·수사정보과 수사제2과 수사지원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·마약수사과 공판과 총무과·사건과·집행제1과·집행제2과· 기록관리과·형사증거과·피해자지원과
-----------	---	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차장 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 (생 략)	제12조(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차장 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 (현 행과 같음)
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 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 · 형 사제1부 · 형사제2부 · 형사제3 부 · 형사제4부 · <u>형사제5부 · 공 판제1부 및 공판제2부</u> 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형사제5부 · 형 사제6부 및 공판제1부</u> ----- -----.
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 라 두는 부 중 <u>형사제6부 · 형사 제7부 · 형사제8부 · 형사제9부 · 여성아동범죄조사부 · 공판제 3부 ·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</u> 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 좌한다.	③ ----- ----- <u>형사제7부</u> ----- ----- -- <u>조세범죄조사부 · 여성아동범 죄조사부 · 공판제2부 · 공판제3 부 및 사무국</u> ----- -----.
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 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제1부 · 공공수사제2부 · <u>형사제10부 · 형사제11부 · 형사제12부 · 형사 제13부 · 형사제14부 및 사무국</u> 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 좌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공공수사제3부 · 중요범죄조사부 · 국제범죄수 사부 ·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제4부</u> ----- -----.
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	⑤ -----

라 두는 부 중 반부패·강력수사제1부, 반부패·강력수사제2부, 반부패·강력수사협력부, 경제범죄형사부, 공정거래조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.

⑥·⑦ (생략)

제13조(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, 공공수사제1부, 공공수사제2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형사제4부, 형사제5부, 형사제6부, 형사제7부, 형사제8부, 형사제9부, 형사제10부, 형사제11부, 형사제12부, 형사제13부, 형사제14부, 반부패·강력수사제1부, 반부패·강력수사제2부, 반부패·강력수사협력부, 경제범죄형사부, 공정거래조사부, 범죄수익환수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공판제1부, 공판제2부, 공판제3부,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공공수사제1부장 및 공공수

----- 반부패수사제1부, 반부패수사제2부, 반부패수사제3부, 강력범죄수사부, 공정거래조사부,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제5부-----
-----.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-----

----- 공공수사제2부, 공공수사제3부-----

---- 반부패수사제1부, 반부패수사제2부, 반부패수사제3부, 중요범죄조사부, 강력범죄수사부, 국제범죄수사부, 정보기술범죄수사부, 조세범죄조사부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공공수사제1부장, 공공수사제

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
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
검사장이 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
사항

5. (생략)

④ 형사제1부장 · 형사제2부장
· 형사제3부장 · 형사제4부장 ·
형사제5부장 · 형사제6부장 · 형
사제7부장 · 형사제8부장 · 형사
제9부장 · 형사제10부장 · 형사
제11부장 · 형사제12부장 · 형사
제13부장 및 형사제14부장은 다
음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
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
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반
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
관한 사항

가. 「형사소송법」 등 관련
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,
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
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송

2부장 및 공공수사제3부장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
리에 관한 사항

5.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와 ---
--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④ -----

-----형사제8부장 및 형사
제9부장-----

---.

1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
리에 관한 사항

치 또는 기록송부 받은 사건

나.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
제1호가목의 범죄 중 고소
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
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
사건

다.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
제1호나목 및 다목의 범죄
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
사건

2. (생략)

⑤ 삭제

⑥ 반부패·강력수사제1부장 및
반부패·강력수사제2부장은 다
음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
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
다.

1.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
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
및 처리에 관한 사항

가.·나. (생략)

다. 강력·마약 관련 범죄
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
지에 준하는 중요 범죄

2. (생략)

2. (현행과 같음)

⑥ 반부패수사제1부장, 반부패수
사제2부장 및 반부패수사제3부
장-----

--.

1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다. ----- 가목 및 나목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4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

⑦ 반부패·강력수사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

3. 일반 형사사건 및 중요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, 그 송치사건의 수사·처리 및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
가.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

나. 중요 기업범죄
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

5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(반부패수사제3부에 한정한다)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---

⑦ 중요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검사장이 지정하는 고소·고발·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

처리, 그 송치사건의 수사·처리 및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
가.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

나. 중요 기업범죄

다. 강력·마약 관련 범죄
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중요 범죄

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
3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

<신 설>

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·마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강력·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

⑨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 형사사건 및 중요 경제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

<신 설>

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, 그 송치사건의 수사·처리 및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<삭 제>

⑩ 국제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

<신 설>

<신 설>

⑬ (생 략)

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된 사항

⑪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정보기술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⑫ 조세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조세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⑬ (현행과 같음)

⑭ -----
-----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3.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

⑮ · ⑯ (생략)

제14조(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 · ② (생략)

③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 · 외사수사부, 반부패 · 강력수사부, 공판제1부, 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.

④ (생략)

제15조(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공공 · 외사수사부, 반부패 · 강력수사부,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형사제1부장 ·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-----
--

⑮ · ⑯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----- 공공 · 국제범죄수사부-----

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-----

----- 공공 · 국제범죄수사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제13조제4항,

의 사항을 분장하고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 ④ (생략) ⑤ 공공·외사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 3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⑥ 삭제 ⑦ 반부패·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의 사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 ⑧·⑨ 삭제 ⑩ (생략) 제16조(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 (생략)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·	제7항,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----- --. ④ (현행과 같음) ⑤ 공공·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 ⑦ ----- 제13조제6항, 제8항----- -----. ⑩ (현행과 같음) 제16조(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
--	---

형사제1부 · 형사제2부 · 형사제3부 · 형사제4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.

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반부패수사부, 강력범죄형사부, 공판제1부, 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.

④ (생략)

제16조의2(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형사제4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반부패수사부, 강력범죄형사부,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형사제1부장 ·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(생략)

-----형사제3부-----

-----.

③-----
----- 형사제4부, 반부패수사부, 강력범죄수사부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2(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-----

----- 강력범죄수사부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형사제2부장 ·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7항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삭 제

⑥ 반부패수사부장은 다음 사항
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
장한다.

1.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
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
및 처리에 관한 사항
가.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
나. 중요 기업범죄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
준하는 중요 범죄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
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
사항

3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
항

⑦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형사사건과 강력·마약
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
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
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
사항

3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
항

⑥ ----- 제13조제6
항 -----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
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인천지방법검찰청에 인권보호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형사제4부, 형사제5부, 형사제6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강력범죄형사부, 외사범죄형사부,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를 두며, 수원지방법검찰청에 인권보호부, 형사제1부, 형사제2부, 형사제3부, 형사제4부, 형사제5부, 형사제6부, 여성아동범죄조사부, 공공수사부, 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형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인천지방법검찰청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·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과 수원지방법검찰청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·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(인천지방법검찰청 및 수원지방법검찰청 형사제6부장을 포함한다)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-----

----- 강력범죄수사부, 국제범죄수사부-----

----- 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수사부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인천지방법검찰청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6항, 제7항,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수원지방법검찰청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,

④ · ⑤ (생략)

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 · 제4항 및 제16조의2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⑦ 방위사업 · 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 형사사건,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· 관리에 관한 사항

<신설>

3.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

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⑦ 방위사업 ·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-----
--.

1. 산업기술 -----

--

2. ----- 사건에 -----
----- 수집 · 정비-----
--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-----

항

⑧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제16조의2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.

⑨ 외사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

⑩ (생략)

제16조의6(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 (생략)

③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·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6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각 형

--

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⑨ 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⑩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6(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형사제4부장·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-----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-----

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16조의7(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 (생략)

③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(생략)

⑤ 반부패·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⑥ 삭제

⑦ (생략)

제16조의8(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 (생략)

③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(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(대전지방검찰청·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7(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7항,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제13조제6항, 제8항 -----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8(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(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2항(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

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
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
장을 포함한다) 간의 사무분담
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(생략)

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,
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
및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
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13
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
사항을 분장한다.

⑥·⑦ (생략)

제16조의9(서울동부지방검찰청
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
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
 부·형사제2부·형사제3부·형
 사제4부·형사제5부·형사제6
 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사이
 버범죄형사부 및 공판부를 두
 고,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
 제1부·형사제2부·형사제3부
 ·형사제4부·형사제5부·조세

에 한정한다), 제3항, 제4항, 제6
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
제14항까지, 제15항(울산지방검
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
한다)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
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
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
장이 정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9(서울동부지방검찰청
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

 -----사이
버범죄수사부 -----

 -----조세

범죄형사부 ·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,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 · 형사제2부 · 형사제3부 · 형사제4부 · 형사제5부 · 식품의약범죄형사부 ·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, 의정부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 · 형사제2부 · 형사제3부 · 형사제4부 · 형사제5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, 청주지방법검찰청, 전주지방법검찰청 및 제주지방법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 ·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, 춘천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.

②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, 형사제3부장,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형사제6부장 및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

범죄조사부-----

-----식품의약범죄조사부-----

-----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-----

--.

② -----

-----형사제4부장,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)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, 제11항, 제12항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한정한다), 제13항, 제14항, 제16조의4제7

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③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· 형사제2부장 ·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④ 의정부지방법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· 형사제2부장 ·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-----
-----.

③ -----
-----형사제3부장 ·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
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
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
항부터 제14항까지, 제16조의4
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
항을 분장하고, 공판부장은 제
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
-----.

④ -----

----- 제13조
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
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
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
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하
고-----
----- 제13조제16
항의 사항을 분장하며-----
-----.

⑤ 청주지방검찰청,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3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3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2부장은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13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⑦ (생략)

⑧ 사이버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 형사사건과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3. (생략)

<신설>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

⑤ ----- 형사제1부장,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-----

-----.

⑥ -----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-----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사이버범죄수사부장-----
-----.

1. 사이버범죄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5. ----- 제4호-----

된 사항

⑨ 조세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 형사사건과 조세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

⑩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반 형사사건과 식품의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3.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

<신 설>

⑨ 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 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⑩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-----
-----.

1. 식품의약 -----

2. ----- 관련된 정보 -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-----
--

⑪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환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

제16조의10(지방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)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,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,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,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,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,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,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,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4부,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,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,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의 분장사무 중

리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정비에 관한 사항

3.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

<삭 제>

제13조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 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건으로 한정한다.

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수사단서 확보과정의 적정성, 사건 내용의 공익성,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되, 수사 여건 및 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,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등은 검찰총장이 정한다.

제16조의11(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(생략)

②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, 의

제16조의11(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, 인천
지방검찰청 부천지청, 수원지방
검찰청 성남지청, 수원지방검찰
청 안양지청, 수원지방검찰청
평택지청, 대구지방검찰청 서부
지청,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
청,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
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
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 및
형사제3부장, 의정부지방검찰청
남양주지청, 춘천지방검찰청 원
주지청,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
청,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,
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, 창원
지방검찰청 진주시청, 창원지방
검찰청 통영지청, 광주지방검찰
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
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
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
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
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.

----- 제13조제2항부터 제
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
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
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--
----- . 이 경
우 제13조제3항제6호, 제6항제1
호, 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호
중 “검사장”은 “지청장”으로 본

③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,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,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,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,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,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. <후단 신설>

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각 지청의 형사부(복수의 형사부를 두는 지청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의 형사부에 한정한다)에서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

다.

③ -----

-----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,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5항---.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, 제6항제1호, 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호 중 “검사장”은 “지청장”으로 본다.

<삭 제>

수사개시 사건을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청의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필요성이 인정될 때

2. 해당 지청 수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

⑤ 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의 승인 및 승인의 요건·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⑥ (생략)

제21조(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 등)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(생략)

<삭 제>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) ① 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8